

(2) 적용 방법: 영 [별표11]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에게 영 [별표25]의 기산호봉을 적용

[기산호봉표 적용 시 주의사항]

- 2개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제 임용된 과목의 소지자격증을 기준으로 기산호봉을 적용함

마) 호봉경력 평가·심의회(영 제10조제1항)

- (1) 구성: 의장 포함 5인 이상으로 구성(의장 : 호봉업무담당관, 간사 : 호봉획정업무 담당자)
- (2) 기능 : 초임호봉 획정, 호봉재획정, 호봉정정 등 호봉 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심의
- (3) 정족수 :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- (4) 운영기준 : 심의회 세부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보수지침」을 따름
 -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·심의회는 유사경력에 대한 호봉획정시마다 개최하여야 함
 - 다만,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만 상향조정 등 단순·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음
 -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호봉 재획정 및 통상적인 휴직·정직·직위해제자의 복직에 따른 호봉 재획정시에는 심의회를 거칠 필요 없음
 - 예규 [별표 2]의 경력환산율 상향 적용을 위해 상통 여부(동일분야) 판단 시 호봉경력 평가·심의회를 거쳐 결정하여야 함